

차고지 설치 확인서

| | | | | |
|-------------|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신청인 | 성명(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) | 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 | | |
| | 주소 | (전화번호 :) | | |
| 차고지 확인내용 | 토지 명세 | 차고지 용도(화물자동차의 종류 기재) | | |
| | | 소재지 | | |
| | | 지목 | 토지 면적(m ²) | 차고지 면적(m ²) |
| | |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 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, 「농지법」, 「산림보호법」, 「자연환경보전법」, 「건축법」,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 등) | | |
| | 소유자 | 성명(법인명) | 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 | |
| | | 전화번호 | | |
| | | 주소 | | |
| | 임차인 | 성명(법인명) | 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 | |
| 전화번호 | | | | |
| 주소 | | | | |
| 임차기간 | | ~ (년 월) | | |
| 비고 | 공동차고지 이용 여부: (공동차고지는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른다.) | | | |

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5조 및 제41조의11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 사업의 차고지로 맞게 설치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